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3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윤준병 · 임미애 · 송옥주
이병진 · 강준현 · 서삼석
전용기 · 최혁진 · 문대림
손 술 · 이원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질서 위반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성명, 주거 기타 행위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을 악용하여 감치 명령 및 집행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묵비(默秘)하는 등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

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정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가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인 감치가 오히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 중 “경찰서유치장”을 “행위자의 성명, 주거 기타 행위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경찰서유치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은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위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감치 등) ①·② (생 략)	제61조(감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치는 <u>경찰서유치장</u> , 교도 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 으로써 집행한다. <단서 신설>	③ ----- <u>행위자의 성명, 주거 기타 행위자 본인의 특징에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경찰서 유치장-----</u> ----- 다만, 법원은 행위자가 유치 집 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위자 본인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u>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 로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하거 나 생략할 수 있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